제1881호

2022. 9. 8.(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6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2-1574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고 시

· 제2022-13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
· 제2022-14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 8

공 고

· 제2022-155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9
· 제2022-1564호 공인 등록 공고 ·····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56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79-2022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57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2022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른 존속 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한 연장
나. 조문 체계 간결화 및 의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다. 타 법령 명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도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4층 도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전화: 02-2670-3830, 팩스: 02-2670-3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영등포구의회”를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영등포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위촉직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③ (생 략)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38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9길 10-9 (신길동)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9길 10-9 (신길동)	2022 0908	신규 부여	2010 0527	여의대방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2-14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구를 영업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처분일자 : '22.9.8.(목)
2. 행정처분 내역

연번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디엠씨 종합건설	홍병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8층 (여의도동, 센터빌딩)	말소	등록기준 미보완(기술인) 주택법 제4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위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5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55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2. 09.08. ~ 22. 09.22.
3. 공고대상 : 43주4718 차량 외 6대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소	명령 일자	운행정지 명령사유
1	43주4718 (KMHEC41LBA 485830)	쏘나타 (SONATA)	최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신길동)	2022-08-02	소유자 요청
2	99나5266 (KNCSJZ74ABK 538847)	동해고소작업차-1007	㈜**테크놀로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 *층 ***호(양평동*가)	2022-08-29	소유자 요청
3	35보4480 (KMHG141DDHU 028359)	EQ900	권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가길 **, *호 (여의도동, 순복음아파트 *층)	2022-08-31	소유자 요청
4	39무6684 (WDDZF0EB4KA 613743)	E220d	유한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호(당산동*가)	2022-08-31	소유자 요청
5	184소9873 (KNHMF37ABJS 411912)	카니발 하이리무진	유한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호(당산동*가)	2022-08-31	소유자 요청
6	51조9887 (KMHFF41CBFA 420320)	그랜저 (GRANDEUR)	유한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호(당산동*가)	2022-08-31	소유자 요청
7	61로1843 (KMHE241CBGA 174573)	쏘나타 (SONATA)	유한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길 **, *층 ***호(당산동*가)	2022-08-31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 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2670-42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564호

공 인 등 록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제8조,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폐기 및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인 등록 내역 (도림동)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등록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8.26.
등록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8.26.
폐기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폐기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등록	도림동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8.26.
등록	도림동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8.26.
폐기	도림동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폐기	도림동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 공인 등록 내역 (신길5동)

공 인 구 분	공 인 명	규격 및 재질	인 영	등록사유	등록일
등록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9.1.
등록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9.1.
폐기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폐기	영등포구청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4cm * 2.4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등록	신길5동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9.1.
등록	신길5동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교체	2022.9.1.

폐기	신길5동장인 통합민원용(세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
폐기	신길5동장인 통합민원용(가로)	2.1cm * 2.1cm 우레탄 (특수고무)		폐기